

의안번호	2211804
의 퇴 인	이학영 의원
회 답 일	2025. 10. 14.
추계번호	25A410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 개정안에 따라 주민이나 주민단체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운영 지원 규정이 신설될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사업 예산이 증액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현행법¹⁾은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할 수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공급·판매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주민(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주민(단체)에 대한 충전시설 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존 사업의 확대와 신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합산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 현재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한 사업이 이미 실시되고 있고, 신규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가정 하더라도 지원 대상·기준 및 설치 수요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²⁾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완속충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며³⁾,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서 주민 또는 주민단체도 이에 포함됨

-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주민 또는 주민단체(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원이나 다가구주택 구성원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

- 다만, 현행 사업은 해당 충전시설을 공용충전시설(사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이용 가능한 충전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지원 대상 충전시설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개정 규정을 근거로 거주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3) 사업명: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33-312)

- 이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실시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투입 규모, 지원 대상 및 범위, 충전시설 설치를 희망할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수요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2025.10.13. 21시 기준 총 45만 5,559개이며, 시·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시·도별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2025.10.13. 21시 기준)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전소 수	66,665	28,005	21,831	27,563	13,830	13,430	9,185	5,603	133,554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충전소 수	15,520	15,511	19,610	15,638	14,653	20,037	26,598	8,326	455,559

자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

- 이에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하여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